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전: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0-6번지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6. 5. 20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주우정(현대엔지니어링(주)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				
	지 번 200-6	관련지번			
	대지면적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880㎡	건폐율		층수 지하: 층/ 지상: 2층	
	주 용 도 가설건축물(사무실)	구 조 프리패브		건축물 동수 1동	
	최고높이 7.75m	용적률		연면적 합계 1,760㎡	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해체분야	○ 조치계획을 반영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진행 하시기 바람 ○ 사전검토 의견은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, 해체단계별 구조안전성 검토 및 작업 단계별 안정성 검토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. 다만, 해체 대상 구조물이 비교적 단순한 프리패브 구조의 가설건축물이며, 주변에 인접 위험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체공사에 따른 중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 ○ 그러나 주요 구조부재 해체 시에는 일시적인 구조 불안정, 부재 낙하 및 장비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, 감리자는 제출된 해체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적절하게 시행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. 특히 주요 구조부재 해체 단계 및 인양작업 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작업순서, 장비 운용상태, 작업반경 내 안전조치, 낙하물 방지대책 및 작업자 통제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하기 바람 ○ 조건부 내용 반영하여 공사 착수할 것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